

# 학교법인세기학원 정관시행규정

(제정 2002.02.08. 법인이사회)

(개정 2012.08.08. 법인이사회)

(개정 2019.07.26. 법인이사회)

(개정 2019.10.22. 법인이사회)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학교법인 세기학원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재산의 관리)** ①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. 다만,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관리, 보존한다.

②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용 재산을 관리, 보존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시행이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1. 교육용 시설의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
2. 교육용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사항
3. 법인 이사장 명의의 전화, 차량 및 기타 재산의 철거 매각 등에 관한 사항
4. 교육용 실험실습시설중 면세물품의 불용결정 및 매각에 관한 사항
5. 교육용 시설의 장기대여에 관한 사항
6. 가건물의 설치 및 폐기에 관한 사항
7. 기타 이사장이 법인의 관리 및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3조 (재산의 취득)** 정관 제6조에서 규정한 기본재산중에는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(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)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시설과 설비도 포함되며, 이의 조성 및 확보 전에 그 시설과 설비의 규모, 시설의 위치, 소요액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**제4조 (설치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)** 정관 제27조에 규정한 설치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, 그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(학생정원의 증감, 학과의 신설과 폐지)
2. 학교의 기구 및 직제의 신설, 조정, 폐지에 관한 사항.
3. 학교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.
4. 기타 학교의 경영에 관하여 이사회의 심의,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.

**제5조 (각종 규정 및 규칙)** ① 교육관계 법령 및 정관과 동 시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인 및 학교의 필요한 사항은 각각의 심의기구를 거쳐 규정류를 제정 또는 개.폐할 수 있다.

② 법인 및 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임면, 보수, 신분보장, 징계 등과 관련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.폐는 각각의 심의기구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6조 (시행규정의 제정 및 개폐)**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및 폐지한다.

**제7조 (교원 임용권의 일부 위임)**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중 재임용, 전보, 겸임, 파견, 휴직 복직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교 총장이 임용하고, 승급은 대학교 총장이 시행

한다.(개정 2019.07.26.) (개정 2019.10.22.)

**부 칙**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

제2조 (대구예술대학교 규정준용) 법인에 근무하는 일반직원의 인사, 보수 등에 관하여 법인에 따로 정한 것이 없을 경우에 대구예술대학교 규정을 준용한다.

**부 칙**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08월 08일부터 시행한다

**부 칙**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07월 26일부터 시행한다

**부 칙**

제7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